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재산 압류)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재산 압류) 사전(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재산 압류)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마.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자.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미실시

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다. 과태료 체납

4. 공고 기간: 2025. 3. 11.(화)~3. 25.(화) 14일간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시 대상

연번	이름	주소	재산 구분
1	서*윤 (개명 전 서*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가길 2*, 2*2호 (내발산동)	자동차 (대상 차량: BMW 1 Series Urban, 1*우9578)
2	박*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 W동화마을어학원 (주엽동, 상가)	부동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 종류:부동산, 지목: 대)

6. 유의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900-2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년 3월 11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